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2015.7.29)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제정의 목적 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○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세부 허가기준 (안 제3조, 제4조)

○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 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 및 제6조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기타

1) 규제심사 :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개최 결과 안 제4조 (허가기준)에 대해 원안 가결(2015.10.8.)

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5.10.8.~10.28)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(안)는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2015.7.29)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❍ 주요 제정 내용은
- 안 제1조,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규정
- 안 제3조, 제4조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세부 허가기준
- 안 제5조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.

❍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다만, 안 제4조 별표 「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기준」중 소규모 사업자인 「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」의 “자격기준” 제한에 있어 “재산세 납부실적 15만원 이상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,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“영업배상책임보험”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능력 범위 규제완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